

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82. 04. 02

□ 개정 : 1989. 03. 01

□ 개정 : 2013. 03. 0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설치)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, 교무입학처장, 단과대학장 및 여학생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기)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생활지도 및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
2.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
3.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
4.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생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학생상담 및 활용) ① 학생상담은 매년 2회를 실시하되, 반드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상담내용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.

③ 위원회는 상담결과를 분석하여, 학생지도 및 학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사무관장) 본 위원회의 실무는 학생지원처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(세부사항)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